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선 람	기관의 장

제8호 2022. 1. 27(목)

<b>공 고</b>
------------

○ 남원시공고 제2022-219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남원시공고 제2022 - 219호

「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규정 (안 제6조)
- 나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 (안 제13조)
- 다. 어문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(안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3조)

### 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26. ~ 2022. 2. 15. 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 제출 사항**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의견 제출할 곳**

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

**다. 의견 제출 방법**

: 서면, 이메일(yun9z@korea.kr), fax(063-620-6702) 및 직접방문 등

**5. 기타사항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(☎063-620-60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6. 붙임 :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##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. .  
제 출 자: 남 원 시 장  
제안설명자: 기 획 실 장

#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학술용역과제 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규정 (안 제6조)
- 나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 (안 제13조)
- 다. 어문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(안 제3조, 제6조, 제9조,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 : 2022. 1. . ~ 2022. 2. . (20일간)
    - 결 과 :
  - 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  - 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방제”를 “예방 및 구제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단서 중 “보궐위원”을 “새로 위촉된 위원”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평가를 실시”를 “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

⑤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, 법정전염병 <u>방제</u>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예방 및 구제</u> ----- -----</p>
<p>제6조(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.</u></p>	<p>제6조(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선출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남원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⑤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2. (생략)</p>	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보궐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⑥ ----- ----- -----. -- <u>새로 위촉된 위원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위원의 위촉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<u>아니하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 <u>않다고</u> -----</p>
<p>3.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학술용역결과의 평가) ① (생략) ② 평가전문위원과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<u>용역결과의 평가</u>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학술용역결과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평가</u> ----- ----- -----.</p>

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③ <u>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.</u></p>

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○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**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**남원시장 귀하**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
-----	---